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16
----------	-----------

제출연월일	2013. 3. 1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 편의도모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군수에게 하던 보상금 청구를 읍·면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나. 읍·면에서 지원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다. 입원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하며, 보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용어·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제2조·제4조)
 - (1) 전염병 ⇒ 감염병
 - (2)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행정정보 확인동의 추가(안 별지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제9조
-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확보(5,000천원)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02.19. ~ 2013.3.1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 규정에 정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부터 제4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거창군”을 “군”으로 “농민”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조의6 제1항의 전염병진단기준에 의해 해당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감염병진단기준에 따라 해당 감염병”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를”을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제3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15조에 의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가족이 군수에게”를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면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해당 연도 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발열성 <u>전염병</u>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감염병</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u>규정에</u> 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p> <p>2. “농업생산활동”이라 함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p> <p>3. “피해 농업인”이라 함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u>자로서</u> 피해 발생일 현재 <u>거창군</u>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농민</u>을 말한다.</p> <p>4. “가을철 발열성질환”이라 함은 쯔쯔가무시증, 렵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말한다.</p> <p>5. “가을철 발열성질환 환자”라 함은 <u>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조의6 제1항의 전염병진단기준에 의해 해당전염병에</u>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야(暗視野)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u>전염병 병원체가 확인된</u>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u>이란</u>----- -----<u>에 따른</u>----- -----</p> <p>2. -----<u>이란</u> ----- -----</p> <p>3. -----<u>이란</u>----- -----<u>사람으로서</u>----- <u>군</u>-----<u>농업인</u>----- -----</p> <p>4. -----<u>이란</u>----- -----</p> <p>5. -----<u>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감염병진단기준에 따라 해당 감염병</u>----- ----- ----- ----- ----- ----- ----- ----- ----- -----<u>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u> 사람을-----</p>

현행	개정안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략) ② 이 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및 농가도우미가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제3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15조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5조에 따라-----</p>
<p>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에 의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p>	<p>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① ----- ----- 따라-----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면장에게 -----</p>
<p>② (생략) <신설> <신설></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해당 연도 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 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p>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

③ 청구금액 중 일반병실이 아닌 특실(1인실, 2인실 등) 입원비는 제외하며, 1회에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2012년 지급금액 : 9,406,000원 / 39명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 영 만